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중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97
----------	-------

발의연월일 : 2025. 9. 2.

발 의 자 : 진중오 · 김용태 · 이인선
이만희 · 고동진 · 이종배
서천호 · 김승수 · 신동욱
김소희 · 박수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치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그런데 최근 지방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회장이 성추행, 갑질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단체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재심을 통해 사건을 축소하는 등 공정성이 결여된 징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개시한 경우 체육단체의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단체의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대한체육회 등이 갖도록 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체육계 전반의 투명성

을 제고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9제13항 및 제14항 신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9제13항을 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중전의 제13항) 중 “제11항 및 제12항”을 “제11항·제12항”으로, “기간 및 정도 등에”를 “기간·정도 및 제13항·제14항에 따른 체육단체의 범위 등에”로 한다.

⑬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스포츠비리나 체육계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수사를 개시한 경우 해당 체육단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내부 징계절차를 개시하거나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⑭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의 임원이 스포츠비리나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징계권한을 갖는다.

1.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그 밖의 체육단체의 임원: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① ~ ⑫ (생 략) <u><신 설></u>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① ~ ⑫ (현행과 같음) <u>⑬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u> <u>기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u> <u>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항에</u> <u>대하여 조사 또는 수사를 개시</u> <u>한 경우 해당 체육단체는 동일</u> <u>한 사안에 대하여 내부 징계절</u> <u>차를 개시하거나 진행하여서는</u> <u>아니 된다. 다만, 스포츠윤리센</u> <u>터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u> <u>사가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u> <u>아니하다.</u> <u>⑭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u> <u>고 체육단체의 임원이 스포츠</u> <u>비리나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u> <u>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다</u> <u>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u> <u>그 징계권한을 갖는다.</u> 1. <u>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u> <u>체육회의 임원: 문화체육관광</u> <u>부장관</u> 2. <u>그 밖의 체육단체의 임원:</u>

⑬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의 방법·기준, 제5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방법·절차, 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의 기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의 <u>기간 및 정도</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u> ⑮ ----- ----- ----- ----- <u>제11항·제12항</u>----- ----- -----<u>기간·정도</u> <u>및 제13항·제14항에 따른 체육단체의 범위 등에</u>----- -----.
--	---